

세계로  
응비하느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I. 감사개요

- 감사배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5)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위반 여부 감사 의뢰\*  
\* 행정안전부 ○○○○과-336(2024. 1. 18.)
- 감사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5) 관련 업무
- 감사기간 : '24. 1. 23.(화)~1. 31.(수) / 7일
- 감사인원 : ○○○○팀장 등 3명(○○○, ○○○, ○○○)

## II. 감사결과 총괄

- 지적 및 처분 건수 : 1건 / 3건
  - 신분상 처분 : 1건 / 4명(훈계 1건/4명)
  - 행정상 처분 : 2건(시정 1, 주의 1)

## III. 처분요구 요약

###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8년 3월부터 '24년 1월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리 업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를 추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등에 군수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고시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 체계 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고,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8. 3. 19. 붕괴위험 유형으로 ○○읍 ○○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군 고시 제2018-28호)했으나,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미등재
  - 또한 '22. 5. 23. ○○지구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였으나, ○○3-5지구 10,131㎡ 중 7,650㎡만 등재하고, 2,481㎡(주택 건설사업계획 대상지)를 '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미등재
- 그로 인하여 위 군(○○○○과)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2,481㎡는 '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나머지 ○○지구는 '22. 5. 23.까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읍 ○○지구 ○개소)가 누락된 채 발급

##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허가권자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조 등에 허가권자는 재해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45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
- 한편 「○○군 ○○○○과 사무분장표」 등에 따르면 '20. 1. 8. 이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는 ○○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는 ○○○○팀에서 수행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전결권자를 과장으로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지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19년, '22년)을 받았으나, '22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시
  - \* '19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검토를 포함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시
- 또한 위 군(○○○○과)은 허가권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과장 전결의 공문(내부결재, 발송)을 생산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세움터 시스템에 허가가능\*하다고 입력
  - \* ○○○('19. 5. 14. 허가가능), ○○○('22. 3. 15. 허가가능)
- 그리고 위 군(○○○○과)은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착공일로부터 8일 후인 '22. 4. 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협의 미실시를 사유로 허가권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
- 그로 인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전반을 검토하지 못한 채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였음을 사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결과 초래

###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등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 등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5 등에 군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책임자의 통보, 착공·준공 통보 미실시\*** 또는 **지연 실시\***하였는데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 \* 2019년 협의(○○ ○○○ 1차) : 관리책임자, 착공, 준공 미통보
    - \*\* 2022년 협의(○○ ○○○ 2차) : 착공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관리책임자, 착공 통보

####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부적정

- 「○○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조례」 제5조 등에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과 붕괴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읍 ○○지구를 **지정·고시한 '18. 3. 19.부터 '23. 12. 21.까지 약 2,103일간 미설치하였고, '23. 12. 22. 설치하였으나 주민 민원을 사유로 '24. 1. 16. 철거 후 '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미설치**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前 과장 1명, 前 담당자 3명 등 총 4명 **“훈계요구”**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읍 ○○3-5지구)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2,481㎡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함께한 후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주의요구”**

# IV.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명)			행정상 처분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F)	시정 (A)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4)		1 (4)	2	1	1				

## 2. 신분상 조치인원

제목	처분내역			
	양정	소속	직급	성명
4명(훈계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과	지방○○○○○	○○○
	훈계	○○면	지방○○○○○	○○○
	훈계	○○○○과	지방○○○○○	○○○
	훈계	○○○○과	지방○○○○○	○○○

## 3. 처분요구서

### 목 차

- 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6

#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군(○○○○과)

- 훈계대상자 ① ○○군 ○○○○과 지방○○○○○ ○○○(○○○○. ○. ○.)  
(前 ○○○○과)
- ② ○○군 ○○면 지방○○○○ ○○○(○○○○. ○. ○○.)  
(前 ○○○○과 지방○○○○○)
- ③ ○○군 ○○○○과 지방○○○○○ ○○○(○○○○. ○. ○.)  
(前 ○○○○과)
- ④ ○○군 ○○○○과 지방○○○○○ ○○○(○○○○. ○. ○.)  
(前 지방○○○○○)

내 용

## 1. 업무개요

○○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지구)를 지정·고시한 2018. 3. 19.부터 20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와 제12조 등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업무 처리 부적정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2018. 3.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지구)를 지정·고시한 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은 2018. 1. 2.부터 2020. 1. 7.까지, 지방○○○○○ ○○○은 2021. 1. 1.부터 2022. 7. 10.까지 ○○○○과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

무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르면 군수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7조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통보받은 군수는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부서<sup>1)</sup>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석회암 공동에 의한 지반함몰 및 침하현상에 의한 붕괴위험 유형으로 ○○읍 ○○3-1지구부터 ○○3-8지구까지의 8개 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sup>2)</sup>하면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다.

1) 「○○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호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군 소속 과·소를 말한다.

2) ○○군 고시 제2018-28호(2018. 3. 19.)

또한 ○○군(○○○○과)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2022. 5. 23.에 등재하였는데 ○○3-5지구 10,131㎡ 중 7,650㎡만 등재한 후 ○○군 ○○읍 ○○리 327-1번지(주택건설사업계획 대상지) 등 2,481㎡를 미등재하였으며, 20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등재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1지구부터 ○○3-8지구까지)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2022. 5. 23.까지, ○○3-5지구 중 2,481㎡는 20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내용이 누락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지구)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2019. 4. 3.과 2022. 2. 23.에 요청 받아 협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 ○○○은 2021. 7. 5.부터 2023. 1. 1.까지 과장으로서 ○○○○과 업무의 전반을 조정·관리하였고, 지방○○○○○ ○○○은 2019. 1. 14.부터 2020. 1. 7.까지, 지방○○○○○ ○○○은 2020. 1. 8.부터 2022. 12. 31.까지 ○○○○과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sup>3)</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sup>4)</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군 ○○○○과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2020. 1. 8. 이후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는 ○○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는 ○○○○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이가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일부개정, 시행 2018. 10. 25.)」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였으므로 「○○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무를 준용한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의 전결권자는 과장으로 되어 있다.

- 
- 3)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 4)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따라서 ○○군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경우 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모든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담당팀에 협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경우 규모에 따라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때 「○○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2차례<sup>5)</sup> 받은 후 2019년에는 담당팀이 갈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에는 업무 담당팀이 다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과)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과정에서 「○○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과장 전결의 공문을 총 3회<sup>6)</sup> 생산한 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통보를 위한 내부결재 또는 발송 공문을 생산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자 임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세움터 시스템에 허가가능하다고 입력<sup>7)</sup>하였으며, 2022. 4. 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협의 미실시를 사유로 공사중지<sup>8)</sup>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결권자인 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세움터 시스템에 등재하여 「○○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전반을 검토하지 못한 채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며, 재

5) ○○과-10136(2019. 4. 3.), ○○과-7441(2022. 2. 23.)

6) ○○○○과-4412(2019. 4. 4.)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검토서 검토 의견 제출” (심의 위원에게 재해영향평가 검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

○○○○과-2778(2022. 2. 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의견 제출 요청” (심의 위원에게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

○○○○과-3225(2022. 3. 7.) “재해영향평가 검토 결과 회신” (심의 위원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작성·제출을 요청하는 문서)

7) ○○○(2019. 5. 14. 허가가능), ○○○(2022. 3. 15. 허가가능)

8) ○○○○과-6413(2022. 4. 29.)

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승인 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착공 일)로부터 8일 만에 공사중지 요청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sup>10)</sup>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9) ○○○-16158(2022. 4. 21.)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따라서 ○○군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착공·준공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2024. 1. 31. 감사일 현재 [표]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2건 중 1차 공동주택사업계획(○○ ○○ ○○○○ 아파트 신축공사)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지 않았고, 2차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 ○○○○ 아파트 신축공사)은 180일이 경과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 통보를 한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현황

(단위 : ㎡)

연번	사업명	연면적	사업기간	협의 업무			비고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착공 통보	준공 통보	
합계	2건			여 1, 부 1	여 1, 부 1	부 1	
1	○○○○○ ○○○○ 아파트 신축공사 1차	30,808	2019.07.02.~ 2021.06.14.	미통보	미통보	미통보	
2	○○○○○ ○○○○ 아파트 신축공사 2차	14,912	2022.04.21.~	통보 (180일 경과)	통보 (180일 경과)	시기 미도래	

자료 : ○○군 제출자료 재구성

###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 후 행위제한지역과 비탈면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과)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지역과 위험지역 범위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 3-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고시된 2018. 3. 19.부터 2023. 12. 21.까지 약 2,103일간 미설치하였고, 표지판의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2023. 12. 22. [그림]과 같이 설치 하였으나, ○○○○○ 1차 입주민들이 표지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임의로 표지판을 철거한 후 2024. 1.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지판을 재설치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중에 있다.

[그림] 표지판 설치 후 철거 현황

2023.12.22. 표지판 설치	2024.01.16. 표지판 철거

자료 : ○○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 (3.과 관련)

○○군(○○○○과)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담당팀과 직접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

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누락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담당팀과 협의가 어려웠다는 의견, 위원들에게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면서 과장 결재를 거쳤으므로 내부 결재가 완전히 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심의 위원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검토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 검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담당하는 팀이 다르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지역·지구의 정보를 관리부서(과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누락·오류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권한 없는 행정행위를 피하고, 공간정보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의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9년에는 심의 위원에게 의견 요청 공문 1건, 2022년에는 심의 위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청 공문까지 2건, 총 3건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조치계획 등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내부결재 또는 발송 공문이 부재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심의 위원의 의견은 1차 아파트 공사 시 석회암 동공 발견에 따른 보강 공사를 실시했으므로 기 실시한 지반조사 2개소 외에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고, 조치계획은 연약지반이 조사되지 않았고 깊이 약 7m에서 풍화암이 조사되었으며, 추가 지반조사 3개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2018년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따른 검토 내용이 아닌 1차 아파트 공사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고, 추가 지반조사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2. 4. 29.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중지를 요청한 사유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미협의인 것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 (4.와 관련)

○○군(○○○○과)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준공 통보를 20일 이후에 통보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령 해석이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차 아파트 관련 2019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준공 통보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고, 2차 아파트 관련 2022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를 180일이 경과한 후 실시한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 3. 17. 2차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결과를 안전총괄과에 알려주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업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 지방○○○○○ ○○○, 지방○○○○○ ○○○과 재해영향평가 업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읍 ○○3-5지구)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2,481㎡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하며(시정)
- ③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함께한 후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에 등재하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시 바랍니다.(주의)